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03호)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도의 적용대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I. 제도개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이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학술연구용품·과학기술연구용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관세 부담을 감소시켜 제품·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입니다.

II. 개정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감면(80%)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중 데이터수집기·가스분석기·폴리싱기·절단기 등을 40개 품목을 제외하고, 보호차단기·전동액추에이터 등을 6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¹⁾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년 7월 6일

(2) 제출방법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kki5805@korea.kr
- 팩스 : 044-215-8075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

| Contact



양다윤 관세전문가
T 02-6011-3056
E dyyang@esein.co.kr



정현욱 관세전문가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